

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·의료·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1 긴급지원 신청 가능한 사유는?

- ①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,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인 경우
-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

2 긴급지원 선정기준은?

- ☞ 다음 ①, ②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
- ① 가구의 소득, 가구의 재산,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
 - ✦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% 이하 가구
 - ✦ 재산기준 : 13,500만원 이하 가구
 - ✦ 금융자산 : 300만원 이하 가구
 - ② 위기상황에 해당하고,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

3 긴급지원 지원내용은?

- ☞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사회복지시설 이용료, 교육비, 그 밖의 지원(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)

4 긴급지원 신청방법은?

- ☞ 신청기간 : 상시, 근무시간 내(평일 월~금, 09시~18시)
- ☞ 신청장소 :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형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
- ☞ 제출서류 :
- ① 현장확인서 1면 1부(별도서식, 구청 홈페이지 <<공지사항>>에서 서식 다운로드 사용 가능)
 -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(별도서식) 1 부
 - ③ 전월세계약서 1부
 - ④ 금융재산 관련 서류 일체(통장사본, 보험증서 등)
 - ⑤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(휴폐업사실증명원, 진단서, 고용·임금 확인서 등)
- ☞ 업무진행절차 : ① 신청서 접수 ▶ ②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▶ ③ 필요성 인정 ▶ ④ 우선지원 실시 ▶ ⑤ 소득재산조사
▶ **지원의 적정성 심사(허위 부당 수급자 비용 환수 조치)**
- ☞ 문 의 처 : 중구청 복지지원과(☎3396-5312) 및 동 주민센터, 보건복지 콜센터 129(국번없이)